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길자 의원 발의】



2021. 11. 2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18호로 2021년 11월 15일 김길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신청 등에 세부사항 명시
(안 제4조~ 안 제7조)

라.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민법」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 다. 입법예고 (2021. 11. 12. ~ 11. 16. / 5일 간)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조례의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 최근 언론(21. 5. 26, 동아)을 통해 보도된 ‘빛의 대물림 형제’는 10년째 연락 두절된 생모가 사망한 외할머니의 상속채무를 포기하면서 어린 자식에게 빛이 대물림되었다는 등의 기사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상속채무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곤 함.
- 아동의 경우, 상속여부 미인지 등으로 의사표시 불가하여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을 떠 안는 상황 등 위기상황이 수시로 노출됨.
- 민법 제997조 및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또한 상속됨.

-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속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의 채무까지 승계하게 된 아동·청소년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사료됨.

○ 주요 내용은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이고 10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적 정의는 각 법률마다 상이하나 본 제정안에서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원연령을 폭넓게 정한 것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법령상 아동 · 청소년 연령 구분 >

구 분	아동 · 청소년 범위
· 아동복지법	18세 미만인 사람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 청소년 보호법	만 19세 미만인 사람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인 사람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규정 함.

< 민법 상 상속 관련 법률행위 구분 >

법률행위	법률효과	절차
단순승인 (제1019조 제1항)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 (제1019조 제1항)	상속 효력을 소멸시켜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위 기간내 상속포기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
한정승인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위 기간내 상속포기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
특별한정승인 (제1019조 제3항)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종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전문가 상담, 등의 자원봉사자 활용 등을 통한 지원방법 및 신청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본 조례안과 관련된 자치단체별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 현재 전국 52곳(광역 8, 기초 44)에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또는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의 제명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 이 중에서 서울시와 14개 자치구 조례 제정현황은 아래와 같음

연번	조례명	공포일자
1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2020. 7. 16.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2019. 11. 8.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2021. 7. 7.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2021. 9. 13.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2021. 9. 24.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2021. 7. 8.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2021. 5. 13.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2020. 10. 8.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	2020. 6. 11.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2021. 3. 26.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2021. 2. 25.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2021. 11. 11.
13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 조례	2021. 7. 20.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2021. 11. 11.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2020. 7. 15.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민법」에서 “상속채무” 관련 용어 사용 및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명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로 제명하였으며,
-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 현행법에서는 재산 뿐 아니라 부채도 상속대상으로 보고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하지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률

지식 부족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해 빚을 대물림 받고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 발굴방안 모색 등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3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